# 심 사 보 고 서

## 【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】

의 안 번 호 360

2024. 1. 25. 도시교통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16. / 김상수 의원 등 8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바지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보행안전지도사 육성·운영 지원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민간활동 장려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~제6조)
- 보행안전지도사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. 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○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계사업과 민간활동 장려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- 4. 질의·답변 요지
  - O 회의록 참고
- 5. 토론요지
  - O 없 음
- 6. 심사결과
  - 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  - O 없 음

붙임: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